

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
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

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,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영희 의원입니다.

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 사이에서 개성의 표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 자전거가, 제동장치 없이 도로와 한강공원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

자전거는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취미이자 소중한 이동 수단이지만,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없는 자전거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평온하게 길을 걷는 이웃에게도 예고 없는 사고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.

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조례안의 핵심은 안 제5조에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여, 도로와 자전거도로, 한강공원 등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.

이번 개정은 단순히 이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.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게 하고, 보행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약속입니다.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, 제동장치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자전거 문화의 시작입니다.

동료 의원 여러분, 이번 조례안이 서울의 거리와 공원에 '안전'이라는 이름의 든든한 브레이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